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3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안
【집행부발의】
검토보고서



2024. 4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4. 4. 17.

기획 재경 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)
- 발의일자: 2024. 4. 5.(목)
- 회부일자: 2024. 4. 5.(목)
- 검토기간: 2024. 4. 5.(목) ~ 4. 11.(목)

2. 제안이유

-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술 발전과 기후위기, 인구위기 등 변화와 위기가 몰려오고, 도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주요 区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구민 의견 반영 여부가 정책 성공에 직결됨에 따라,
- 대구광역시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범구민적 차원의 소통을 통한 공감을 이끌어내 정책 추진에 원동력으로 삼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목적(안 제1조)
-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: 아래 사항에 대한 자문 등
 - 구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사항

- 구정 주요정책 홍보 및 주민 참여에 대한 사항
 - 구정 주요정책 또는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 및 범구민적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
 - 두류공원 대개조 및 대구 백년대계를 바라볼 랜드마크적 대구시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의견 제안
 - 기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
 -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등
-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 - 소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9조)
 - 포럼 시행 및 경비지원 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1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24. 3. 4.~3. 25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 · 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의 도시경쟁력 강화, 미래발전 전략 수립, 구정 주요정책 및 현안 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고, 범구민적 의견 수렴 · 건의 · 제안을 위한 『달서구 미래발전위원회』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의 목적,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전의·제안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·운영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회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고, 구청장 및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,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하고,
-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이해관계인 출석 등 의견청취와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포럼·공청회·설문조사 등 여론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포럼 등의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·제79조를 근거로 한 자문기관의 설치 및 기능,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필요사항을 규정한 내용과, 규정의 주요 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한 다방면의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,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 및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됨.

○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【관 계 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